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29
------	------

2020. 4. 24.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3일, 권영희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0. 4. 2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권영희 의원)

### 1. 제안이유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포함하며,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창업지원 사업과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의 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학을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상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각종학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 다. 창업지원 사업과 기술매칭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4조)
- 라.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의 부회장 선출 방식을 회칙에 위임하고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제18조)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대학과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시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정책협의회 자문단 신설 등으로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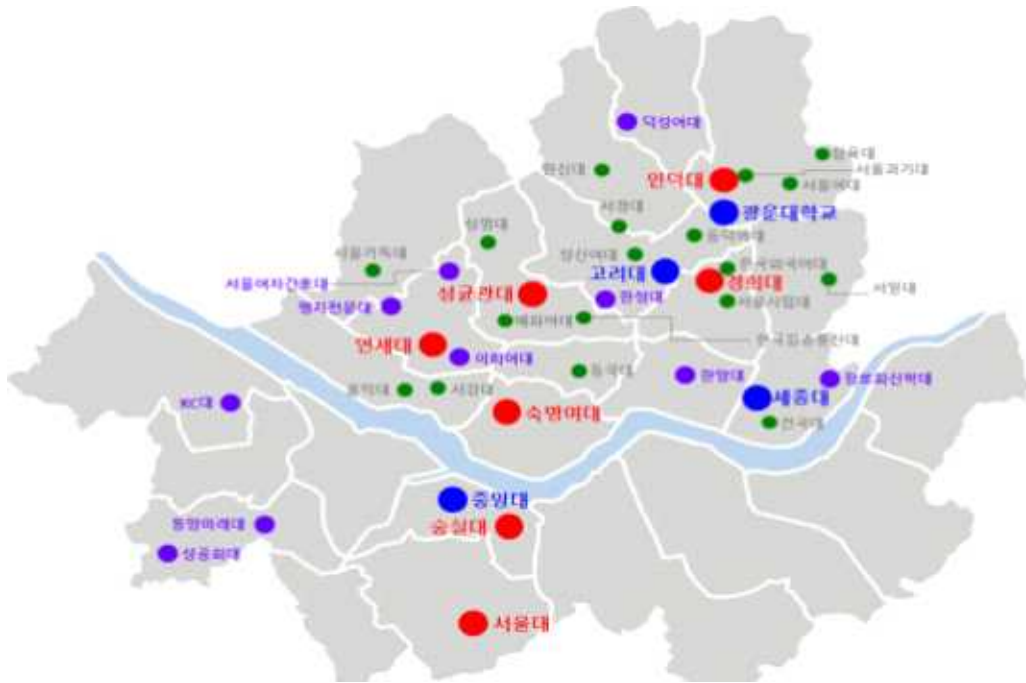
- 서울시는 대학-청년-지역의 융합을 통해 청년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고자 청년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둔 캠퍼스타운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캠퍼스타운 사업은 ‘종합형’ 과 ‘단위형’ 으로 구분되며, ‘종합형’ 은 창업육성·주거안정화·문화특성화·상권활성화·지역협력 등 5개 분야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고, ‘단위형’ 은 5개 분야 중 대학과 지역에 필요한 분야를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하는 방식임.

#### <캠퍼스타운 사업 종류와 특성>

구분	사업분야와 방식	사업기간	사업비
종합형	5개 분야를 통합 추진 (창업육성,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4년	연도별 최대 20억원
단위형	5개 분야 중 1~2분야를 선택 추진	3년	연도별 최대 5억원

- 2020년 현재까지 지정된 ‘종합형’ 은 11개, ‘단위형’ 은 36개이며 향후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60개 사업지까지 확장해 혁신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임.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 현황>



종합형 (11개)	'17~'20년(1) ●	고려대
	'19~'22년(3) ●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
	'20~'23년(7) ●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송실대, 연세대, 인덕대
단위형 (36개)	1단계(13) ( '17~'19년) ■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동양미래대, 서울대, 서울여자간호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인덕대, KC대, 한성대, 흥익대
	2단계(13) ( '19~'21년) ■	건국대, 동덕여대, 배화여대, 삼육대·서울과기대·서울여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서일대, 성신여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외대, 한신대
	3단계(10) ( '20~'22년) ●	덕성여대,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서울여자간호대, 성공회대,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한성대, 한양대, KC대

## 다. 개정안 주요 내용

### (1) 대학의 범위(안 제2조제1호)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학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학교 외에 “각종학교”를 추가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는 65개이고, 이 중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에 참여 중인 학교는 48개이며, 캠퍼스타운 사업 선정 대학은 34개임.

###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대학	산업 대학	교육 대학	전문 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술 대학	각종 학교
서울소재	65	42	-	11)	9	11(10)2)	13)	14)
참여대학	48	40	-	1	5	1	-	1
사업선정	34	27	-	-	6	1	-	-

- 현행 조례 제2조제1호는 대학의 범위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sup>5)</sup>으로 한정하고, 「고등교육법」상의 기술대학과 각종학교는 제외하고 있음.
- 이 중 각종학교에 속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성북구 소재)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종합예술학교로,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 충분한 시설(교사 120,341㎡·교지 192,313㎡)과 인적 자원(재적학생 3,235명)을 갖추고 있어(2019년 기준)<sup>6)</sup> 향후 캠퍼스타운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국내 유일의 기술대학인 정석대학은 사실상 한진그룹의 사내 대학으로 한진그룹 본사 건물(강서구 공항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적학생은 76명에 불과함(2019년 기준)<sup>7)</sup>.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대상에서 서울 소재 유일한 각종학교인 국립대학이 특별한 이유없이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의 범위를 각종학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현행화를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1) 서울교육대학

2) 원격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와 10개의 사이버대학임.

3) 정석대학

4) 한국예술종합학교

5) 사이버대학은 청년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배제되었음.

6)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7)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 (2)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범위(안 제2조제2호)

- 개정안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정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가하고, 제3장의 제명을 ‘대학제안사업’에서 ‘캠퍼스타운 조성·관리’로 변경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고려대가 소재한 성북구 안암동 일대가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대학과 지역이 연계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작되었음.
- 이후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이 관할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업은 2020년도 말에 종료되어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해당 지역의 발전동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임(6월 접수).
  - 2020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약 1조원이며 총 120곳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임.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구분	시·도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앙정부 선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면단위 사업		點단위 사업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거점연계 뉴딜)	인정사업
선정규모	50곳 내외 (4,000억원)	5곳 내외	15곳 내외	50곳 내외

- 서울시는 SH공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고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사업기간 5년, 국비지원 최대 150억원<sup>8)</sup>)을 통해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총괄사업관리자의 사업 유형>

구분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법정 유형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
사업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규모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권,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저층 주거밀집 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향만 등
기반시설 도입	골목길정비·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소규모 공공 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 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 복지·편의시설
권장면적	5~10만㎡	10~15만㎡	20만㎡ 내외	20~50만㎡ 내외
국비지원 /집행기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8) 서울시는 시비 150억원(기존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비 50억원 포함)을 매칭해 국비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임(특별시는 국고보조율 40%).



- 하지만, 현행 조례는 대학과 자치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공모 방식의 ‘대학제안사업’만을 규정하고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사업방식은 누락되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3) 창업지원 사업(신설, 제4장·안 제13조~안 제15조)

- 개정안은 대학에서 수행하는 창업지원 사업과 별개로 서울시가 독자적인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4장 창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각각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에서 제1항은 창업공간 조성·자금 지원·창업박람회 개최·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 전분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창업경진대회의 개최와 우수 성과자의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9년 10월에 캠퍼스타운 페스티벌의 세부행사로 피칭 경진대회(Pitching Day)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매년 실시할 계획임.

- 안 제14조는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캠퍼스타운 사업 참여 대학의 인적 인프라와 연계한 컨설팅과 기술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기술매칭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매칭사업 개요 >**

- ▶ 주관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 ▶ 지원대상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컨설팅/R&D),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R&D)
- ▶ 지원내용 : 창업기업 등이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기술에 대한 컨설팅 또는 R&D
- ▶ 추진방법 : 캠퍼스타운 온라인플랫폼 또는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매칭, 기술문제 해결
- ▶ 사업기간 : 기술컨설팅 3개월 이내, R&D 1년 이내
- ▶ 소요예산 : 2,006백만원(컨설팅 206백만원, R&D 1,800백만원)

사업내용	총지원규모	목표 건수	건별 지원금	지원기간
기술컨설팅	206백만원	103건 이상	20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R&D	1,800백만원	18건 이상	1억원 이하	1년 이내

▶ 사업 흐름도

```

graph LR
    A["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서울소재 중소기업 포함)  
- '20년 500개 창업기업  
- '21년 1,000개 창업기업  
-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등"]
    B["서울기술연구원  
(SBA 협업)  
- 기업 기술애로 접수 및  
최적 전문가 선정·매칭  
*접수처 :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 컨설팅·R&D 관리·평가  
*기업 만족도 조사 병행"]
    C["캠퍼스타운 대학 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  
- 보유 기술 정보 제공  
- 최적 기술 관련 컨설팅  
또는 R&D 실행  
- 기술전수 기업 사후 협업"]

    A -- "기술 매칭 신청" --> B
    B -- "최적 기술 또는 솔루션 제공" --> A
    B -- "최적 기술 경쟁 공모" --> C
    C -- "최적 기술 용모" --> B
  
```

- 또한, 안 제15조는 창업지원(안 제13조)과 기술매칭사업(안 제14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창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이 연계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과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창업 인프라 조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대학과 지역의 인적·물적 역량과 환경을 고려한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컨설팅·R&D·특허·기술이전 등 창업 전문분야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함.
- 다만, 안 제14조에서 기술매칭사업의 지원대상을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있어 캠퍼스타운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며, 타 부서(경제정책과·서울기술연구원)와도 업무상 혼선이 우려됨.
  - 기술매칭사업 중 R&D 사업(18억원)은 경제정책과 소관이고, 기술 컨설팅 사업 예산은 캠퍼스타운과에 편성되어 있으나[2억 6백만원, 종합형(11개)×1천만원, 단위형(24개소)×4백만원], 업무의 대부분은 서울 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기술컨설팅 진행절차>



- 또한,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별로 컨설팅에 대한 수요와 요청 수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컨설팅 예산을 대학별로 안분 배정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4) 정책협의회(안 제16조 제4항, 제18조 제4항 신설)

-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협의, 캠퍼스타운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지원 기구로, 2018년 12월 부터 서울시장과 각 대학의 총장들(現 48명)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정책협의회의 회장을 대학총장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정책협의회 위원인 대학총장 중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의 회장과 9명의 부회장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안 제16조제4항은 정책협의회의 부회장 정수와 임명방식을 정책협의회 회칙에 위임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정책협의회의 민주적·자율적 운영을 위해 타당하고 판단됨.
- 한편, 안 제18조제4항은 대학별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교수들을 위원으로 하는 자문단을 신설하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교수의 수당·여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정책협의회는 정기회의(상·하반기 각 1회)와 임시회의를 통해 정책 협의회의 대상과 내용이 확대되면서 원활한 협의와 사전 검토 등 실무적 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캠퍼스타운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교수가 중심이 된 자문단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됨.

#### (5) 종합의견

-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인 대학의 범주에 국립학교인 각종학교가 누락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대학의 창업지원 사업과 별개로 서울시 차원의 창업지원 사업과 기술매칭사업을 규정해 창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협의회 부회장 정수·선출방법의 회칙 위임과 자문단 운영으로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 다만, 캠퍼스타운 사업은 선정된 대학의 사업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없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성과기준 마련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방만한 운영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캠퍼스타운 대상지역이 대학 인근 지역으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서울 전역의 창업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정책실의 타 부서와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9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3일

발 의 자 : 권영희, 채인득, 유 용,  
김상훈, 이현찬, 이광호,  
경만선, 이준형, 이호대,  
이세열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포함하며,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창업지원 사업과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의 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학을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상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 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각종학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운영 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 다. 창업지원 사업과 기술매칭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4조)
- 라.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의 부회장 선출 방식을 회칙에 위임하고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제1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학”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한다)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란 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대학제안사업

- 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대학, 자치구와 함께 조성·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제3장의 제명 “대학제안사업”을 “캠퍼스타운 조성·관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학제안사업 공모에 선정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을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으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4장과 제13조부터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창업지원 사업

제13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조성, 창업 자금 지원, 창업박람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 활성화와 홍보·마케팅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성과자에게 시상금, 창업공간 이용 자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우수 성과자의 포상과 우대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술매칭사업)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예비 창업 기업을 포함한다)과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의 교원·연구원 등과 연계한 적정기술 컨설팅, 기술연구개발 등 기술매칭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술매칭사업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행·위탁) 시장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회장을 둔다. 부회장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정책협의회회의 운영과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각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교수들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담당교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대학”이란 「<u>고등교육법</u>」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학(제5호에서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중 <u>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학을 말한다.</u></p> <p>2. “<u>캠퍼스타운 조성 사업</u>”이란 <u>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대학”이란 <u>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u></p> <p>2. “<u>캠퍼스타운 조성 사업</u>”이란 <u>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가. <u>대학제안사업</u></p> <p style="margin-left: 20px;">나. 「<u>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12조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u>대학과 자치구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사업</u></p>
제3장 <u>대학제안사업</u>	제3장 <u>캠퍼스타운 조성·관리</u>
<p>제9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u>대학제안사업 공모에 선정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9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u>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제4장 창업지원 사업</p>
<p>&lt;신설&gt;</p>	<p>제13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조성, 창업 자금 지원, 창업박람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창업 활성화와 홍보·마케팅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성과자에게 시상금, 창업공간 이용 자격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p>③ 우수 성과자의 포상과 우대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lt;신설&gt;</p>	<p>제14조(기술매칭사업)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예비 창업기업을 포함한다)과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의 교원·연구원 등과 연계한 적정기술 컨설팅, 기술연구개발 등 기술매칭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기술매칭사업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lt;신설&gt;</p>	<p>제15조(대행·위탁) 시장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제4장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제5장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p><u>제13조</u>(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구성)</p> <p>①~③ (생략)</p> <p><u>④ 부회장은 정책협의회 위원인 대학총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u></p>	<p><u>제16조</u>(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구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u>④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회장을 둔다. 부회장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회칙으로 정한다.</u></p>
<p><u>제14조</u>(정책협의회 기능) (생략)</p>	<p><u>제17조</u>(정책협의회 기능) (현행과 같음)</p>
<p><u>제15조</u>(정책협의회 운영 등)</p> <p>①~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④ (생략)</p>	<p><u>제18조</u>(정책협의회 운영 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u>④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각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교수들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담당교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⑤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비용 발생
  - ※ 제13조(창업지원) 및 제14조(기술매칭사업), 제18조제4항(정책협의회 운영 등)의 경우에도 비용은 있으나 관련 예산이 아래와 같이 편성되어 있음

### 〈 비용 조항 및 2020년 관련 예산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조항	관련 예산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액
제13조 (창업지원)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	창업공간 조성	9,000,000
	캠퍼스타운 박람회 및 컨퍼런스 개최	캠퍼스타운 사업 박람회	104,290
	광운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창업경진대회 개최	50,000
	중앙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지역 및 공동 창업경진대회	120,000
제14조 (기술매칭사업)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대학기술매칭센터 운영	45,000
		기술매칭센터 운영 인력	30,000
제18조제4항 (정책협의회 운영 등)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운영	캠퍼스타운 전문가협의회 등 운영	39,798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대학의 범위를 종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비대학 제외)에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각종학교까지 확대함에 따라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한국예술종합대학’ 1개교로서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선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비용발생 추계가 곤란함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